

「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영태 의원

2. 찬 성 자: 강승수 의원 외 8인

3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하고,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 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 개정
- 책무(안 제3조)
- 향토유산위원회(안 제4조~제11조)
- 향토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(안 제12조~제15조)
- 지정향토유산의 관리 및 보호(안 제16조~제20조)
- 향토유산 교육 등 지원(안 제21조)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조, 제13조
-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3조, 제25조, 제26조
-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1조, 제12조
-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시행(2024. 5. 17.)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·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국가유산 체계의 개편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지역 고유 자산의 보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향토자연유산의 지정 기준은 상대적으로 모호할 수 있으므로, 유형별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아울러 향토유산위원회는 지역 문화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집행부서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역사, 문화 관련 자격 및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뿐 아니라 ‘지역 문화’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갖춘 인력을 사전에 파악·관리하여 위촉 대상자 풀(pool)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